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선	군	수
람		

규 칙

군 보

제530호 2019.2.28.(목)

- 진안군 규칙 제2412호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1
- 진안군 규칙 제2413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2
- 진안군 규칙 제2414호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14
- 진안군 규칙 제2415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6

발행 진 안 군 (편집 기획감사실(063)430-2838)

제530호

진안군보

2019.2.28(목)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2019.2.28

2019년 2월 28일

진안군 조례 제2412호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2019년 2월 28일

진안군 조례 제2413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16조 중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5와

같다”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다”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연가 당겨쓰기) 군수는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17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군

수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군수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군수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제20조제5호 중 “건강검진”을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1조제4항 본문 중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口)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⑬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
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1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 5와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6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6]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형, 형수, 동생, 제수)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복장 등) ① (생 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 <u>공무원증 규칙</u> 」을 준용한다.	제13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국가공무원 복무규칙</u> 」(인사혁신처 총리령)-----.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 : 3일 2. 재직기간 6월 이상 1년 미만 : 6일 3.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4.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5.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6. 재직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7. 재직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8. 재직기간 6년 이상 : 21일 ② · ③ (생 략)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 <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11</td></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td>12</td></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td>14</td></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5</td></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7</td></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td>20</td></tr> <tr> <td>6년 이상</td><td>21</td></tr> </tbody> </table> ② · ③ (현행과 같음)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 」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 략)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사망하거나 결혼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⑥ <삭 제>

제17조의2(연가 당겨쓰기) 군수는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신 설>

제17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

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군수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군수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제20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4. (생 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공가) -----

1.~4. (현행과 같음)

5. -----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
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을 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③ (생 략)

제21조(특별휴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
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
로 받을 수 있다.

④ ----- 난임

치료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
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
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

-----.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
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얻을 수 있다.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 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신 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 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신 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⑬ 군수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신 설>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530호

진안군보

2019.2.28(목)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칙 1696



2019년 2월 28일

진안군 조례 제2414호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3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u>제3조 (생 약)</u>	<u>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u>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치 2019.2.28



2019년 2월 28일

진안군 조례 제2415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을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일비”를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를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3]”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을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3]”로 한다.

제10조 중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를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표3과 별표4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6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 내역		비고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 원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6조제2호 관련)

연도별	지급 기준액
2019년	월 1,645,260원
2020년	2020년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
2021년	2021년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
2022년	2022년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

[별표 3]

국내여비정액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철 도	선 박	항 공	자동차	일 비	숙박비	식 비	비고
운 임	운 임	운 임	운 임	(1일당)	(1박당)	(1일당)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25,000	

- 비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국 외 여 비 정 액 표 [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미달러(\$)화]

구 分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의장 · 부의장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1등석 정액		가등급35	실비(상한액:223)	가등급107	4개 항목 실비 :비자발급비(비 자면제프로그램 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및 부대경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 요한 실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 요한 실비			나등급35	실비(상한액:160)	나등급78	
의원	·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 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 우: 그 실비	2등석 정액		다등급35	실비(상한액:130)	다등급58	4개 항목 실비 :비자발급비(비 자면제프로그램 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및 부대경비
					라등급35	실비(상한액:85)	라등급49	
			실 비		가등급30	실비(상한액:176)	가등급81	
					나등급30	실비(상한액:137)	나등급59	
					다등급30	실비(상한액:106)	다등급44	
					라등급30	실비(상한액:81)	라등급37	

※ 비고

-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되며,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 나. 나등급
 -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 남 · 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펜

란드, 형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양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멜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尼斯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캐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拉斯,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볼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래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튜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 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여비의 종류) ① 회기중 본회 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 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 비는 운임(<u>철도운임·선박운임· 자동차운임</u>)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 외여비는 운임(<u>철도운임·선박운 임·자동차운임</u>)일비, 숙박비, 식 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 ----- ----- ----- ----- ----- ----- ----- ② ----- ----- ----- ----- ----- -----.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 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 비와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한다. 1. <u>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매월 900,000원과 보조활 동비 매월 200,000원으로 한다.</u> 2. <u>월정수당은 매월 1,504,235원으 로 한다.</u> 3. (생략)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 준) ----- ----- ----- 1. <u>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u> 2. <u>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 와 같다.</u> 3. (현행과 같음)
제8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 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 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여비지급기준) ① ----- ----- ----- ② ----- '별표 4' -----.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진안군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동일 군내라 하더라도 용담,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부귀, 주천면 출장시는 [별표 1]의 국내여비정액 표에 의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진안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 ① -----

----- '별표 3'-----

-----.

② -----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

----- '별표 3'-----

-----.

제10조(준용) -----

-----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